출처증명서 재발급규정

(604)

출처증명서 재발급규정

목 차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재발급의 종류)

제4조(재발급 방법)

제5조(재발급 조건)

제6조(재발급 기간)

제7조(재발급 신청)

제8조(재발급 통보)

제9조(수수료)

부 칙

출처증명서 재발급규정

1999. 1. 1 제정
2004.11.18 개정
2005.11.25 개정
2016. 8. 1 개정
2017.11. 1 개정
2025. 8.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는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검사업무에 관련된 출처증명서의 분실, 악용을 예방하고 재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제조품 안전검사를 필한 제조명세서(협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제외)

②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수입품 안전검사를 필한 수입신고필증(휴대품 신고서등 포함)(개정 2017.11.1)

③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분 중에 검사를 필한 임시영치증명서

제3조(재발급의 종류) 이 규정의 재발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명세서

② 수입신고필증(휴대품신고서 등 포함)(개정 2017.11.1)

③ 임시영치증명서

④ 기타

제4조(재발급 방법)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제조품 및 수입품, 불법무기자진신고 등 협회에 검사를 필한 제품의 출처증명서에 대하여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발급한다.

① 출처증명서 [제조명세서, 수입신고필증(휴대품신고서 포함) 임시영치증명서 등]에 기입된 제조번호를 협회 검사필증 발부대장과 확인한 후 검사필 스티커 및 검사원인

장과 재발급 고무인을 날인하고 검사당시 협회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04.11.18)

② 출처증명서 재발급은 협회에서 실시한다.

제5조(재발급 조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분실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만 재발급을 실시한다.

제6조(재발급 기간) 출처증명서 재발급은 문서접수 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조(재발급 신청) 출처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문서로 협회에 신청한다.

제8조(재발급 통보) 출처증명서는 문서로 해당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천원으로 한다.

②출처증명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협회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5.8.29.)

③수수료는 장당 징수한다.

부 칙(1999. 1. 1)

①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5)

①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①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①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8. 29)

①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